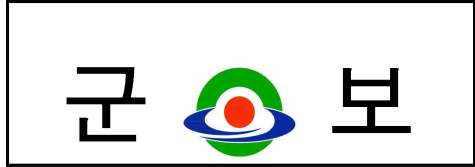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86호 2024. 12. 30.(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려

-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671호)
-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72호)
-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73호)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74호)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75호)
-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76호)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77호)
-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78호)

규 칙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예천군 규칙 제1348호)

훈 령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예천군 훈령 제46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71호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예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

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예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안 제3조)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 재정적 지원(안 제4조)

-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등에 예산 지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72호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의회”를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서면”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한 상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허용 등 선물 범위 확대 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1 제1호)
- 나.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까지 확대 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1 제3호)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73호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군민”을 “예천군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천군 이외”를 “군 이외”로 한다.

제4조 중 “군민”을 “예천군민”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을 “(교류·협력사업 지
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하여”로, “사업”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

업”으로, “행정·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향인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 축제와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 교통비 등 경비
2. 문화·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
3.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식비, 교통비 등 경비
4.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류·협력사업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관계인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관계인구: 예천군에 정주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예천군에 관심을 갖고 정기·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외지인

◇주요내용

가. 교류·협력사업 지원 범위(안 제5조)

- 출향인을 위한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 추가 신설

나. 교류·협력 사업 지원내용(안 제6조)

- 군내 축제와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 교통비 등 경비
- 문화·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
-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식비, 교통비 등 경비
- 고향 방문 사업과 고향 탐방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7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8호다목의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 공사(국가유산과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전문가
- 제43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예천군 경관 조례」의 개정) 예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나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안내시설물의 종류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및 인용 법령 일괄 정비

-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나. 개정대상 : 조례 9건 (8개 소관부서)

연 번	부 서	조 례 명
1	기획예산실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조)
2	재무과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안 제2조)
3	문화관광과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4	종합민원과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5	안전재난과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6	건축과	예천군 경관 조례(안 제6조)
7	건축과	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7조)
8	환경관리과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8조)
9	보건소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9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75호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업”이란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기업인”이란 제8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10. “근로자”란 제8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업 등”이란 기업, 기업인 및 근로자를 말한다.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고,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기업 등 교류·협력사업 지원) 군수는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생산품 홍보 및 투자유치 촉진 행사
2. 기업 등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 투자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4. 그 밖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지원내용) 제3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생산품 홍보 및 투자유치 촉진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경비
2.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
3. 투자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경비 및 기념품 지급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관내·외 기업과의 교류 활성화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교류·협력사업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천군과 관내·외 기업 간 관계 맺기 사업 추진을 통해 관계인구를 발굴·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 등 교류·협력사업 지원 범위(안 제37조)

- 기업 등이 참여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행사 신설

나. 기업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내용(안 제38조)

- 기업 생산품 홍보 및 투자유치 촉진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경비
- 기업 등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
- 투자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경비 및 기념품 지급 등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76호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조정관, 통제관”을 각각 “통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로 한다.

4.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난”을 “재난상황 및”으로 한다.

제5조 중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을 “차장·통제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총괄조정관, 통제관”을 “통제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총괄조정관, 통제관”을 “통제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6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 상황 보고서 작성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재난문자발송 등) 다)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요청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라) 본부장 주재 회의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마)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영상회의 준비) 바)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아)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자) 인명·재산 피해상황 및 재난지역 수습상황관리
	2)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지원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3)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다) 여론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구 분		업무와 역할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사망·실종자 장례지원 및 유족관리: 주민행복과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 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 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구 분		업무와 역할
		※ 시설 응급복구반(9) :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촌활력과, 건설교통과(2), 안전재난과, 건축과, 맑은물사업소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 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도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ystem : DRSS) 운영 및 가동 나) 피해 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다) 장비·자재 부족 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라) 타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마) 재난관리자원의 해당부서 및 관리기관별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대중교통 소통 등 교통 전반 총괄 나)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협의·지시에 관한 사항

구 분		업무와 역할
		다) 버스 우회 노선 및 마감 시간 연장에 관한 사항 라) 물자 등 긴급 수송 등 수송체계 구축 마) 교통상황 안내 및 홍보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위생관리 지도·확인: 종합민원과 위생팀(상황발생시)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초기 이후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지원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기관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군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 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국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청사 사고	행정문화복지국	재무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해당 실과소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경제농림국	축산과
	나. 저수지 사고	경제농림국	농촌활력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 라.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다.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라. 황사 마.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미세먼지	건설도시국	환경관리과
	바.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맑은물사업소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국	주관부서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도시국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나. 화재·위험물 사고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Ⅶ.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행정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경제농림국	산림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 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담 당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근무인원		22+ α + β + γ 명
	상황관리 총괄반 (2명+ α)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1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상황보고서 작성팀(1)	· 안전재난과 1명 · 재난수습주관부서 α 명(재난상황에 따라)
	협 업 기능반 (20명+ β)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 사회복지과 1명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 환경관리과 1명
		다) 긴급 통신 지원반(1)	· 총무과 1명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9)	· 해당 실·과 1명씩 (8개 부서 9명)
		마) 에너지 기능복구반(1)	· 지역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1)	· 홍보소통과 1명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1)	· 안전재난과 1명
		아) 교통대책반(1)	· 건설교통과 1명
		재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1)	· 보건소 1명
		차) 자원봉사 관리반(1)	· 사회복지과 1명
		카) 사회질서 유지반(1)	· 예천경찰서 1명
		타) 수색, 구조·구급반(1)	· 예천소방서 1명
		파) 협업기능반 지원	· 각 부서 협업 기능반 β 명(상황에 따라)
	12개 읍·면(γ)		· 읍·면 직원(1/4근무) 및 대피지원근무자

비고(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담 당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근무인원		24+ α + β + γ + δ 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 α)	가)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1명
		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상황보고서 작성팀(1)	· 안전재난과 2명 · 재난수습주관부서 α 명(재난상황에 따라)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1)	
		라) 행정지원팀(1)	· 총무과 1명
	협 업 기능반 (20명+ β)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 사회복지과 1명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 환경관리과 1명
		다) 긴급 통신 지원반(1)	· 총무과 1명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9)	· 해당 실·과 1명씩 (8개 부서 9명)
		마) 에너지 기능복구반(1)	· 지역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1)	· 홍보소통과 1명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1)	· 안전재난과 1명
		아) 교통대책반(1)	· 건설교통과 1명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1)	· 보건소 1명
		차) 자원봉사 관리반(1)	· 사회복지과 1명
		카) 사회질서 유지반(1)	· 예천경찰서 1명
		타) 수색, 구조·구급반(1)	· 예천소방서 1명
		파) 협업기능반 지원	· 각 부서 협업 기능반 β 명(상황에 따라)
	12개 읍면(γ 명)		· 읍·면 직원(1/4근무) 및 대피지원근무자
	유관 기관(δ 명)		· 육군3260부대 2대대, 공군제16비행단, 예천교육지원청, KT 예천지사, 한국전력 예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

비고(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 3단계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담 당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근무인원		24+ α + β + γ + δ 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 α)	가)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1명
		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상황보고서 작성팀(1)	· 안전재난과 2명 · 재난수습주관부서 α 명(상황에 따라)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1)	
		라) 행정지원팀(1)	· 총무과 1명
	협 업 기능반 (20명+ β)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 사회복지과 1명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 환경관리과 1명
		다) 긴급 통신 지원반(1)	· 총무과 1명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9)	· 해당 실·과 1명씩 (8개 부서 9명)
		마) 에너지 기능복구반(1)	· 지역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1)	· 홍보소통과 1명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1)	· 안전재난과 1명
		아) 교통대책반(1)	· 건설교통과 1명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1)	· 보건소 1명
		차) 자원봉사 관리반(1)	· 사회복지과 1명
		카) 사회질서 유지반(1)	· 예천경찰서 1명
		타) 수색, 구조·구급반(1)	· 예천소방서 1명
		파) 협업기능반 지원	· 각 부서 협업 기능반 β 명(상황에 따라)
	12개 읍면(γ 명)		· 읍·면 직원(1/2근무) 및 대피지원근무자
	유관 기관(δ 명)		· 육군3260부대 2대대, 공군제16비행단, 예천교육지원청, KT 예천지사, 한국전력 예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

비고(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담 당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8 + \alpha + \beta + \gamma$ 명	
	반 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7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안전재난과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4명)	· 안전재난과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관리과
		다) 긴급통신 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지역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소통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사회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예천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예천소방서

	3)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 3260부대 2대대, 공군16전투비행단,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북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북부지사, 한국전력예천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4)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이유

- 예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안 제3조제2항)

- 총괄조정관 : 삭제
-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위원 정비(안 제13조제2항)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별표 1 ~ 5)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77호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신고필증 교부에”를 “신고증명서 발급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단의 경우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
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① 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명함식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 수거하여 제출하는 사람에게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 · 범위 ·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이상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이상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태 료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17만원 - 3.7㎡ 이상 4.4㎡ 미만 22만원 - 4.4㎡ 이상 5㎡ 미만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33만원 - 6㎡ 이상 8㎡ 미만 50만원 - 8㎡ 이상 10㎡ 미만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삭 제 <2019. 12. 12.>	<삭 제>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6.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하 나. 30일 초과 90일 이하 다. 90일 초과	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u>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u> <u>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u> <u>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5백만원)</u>

[별지 제2호의2서식]

전 단 신 고 필

신고번호: 00-0000
일련번호: No.00
· · · · · 까지 00장 배포

예천군수

□ 비 고

- 신고번호: 신고 수리 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 ※ 날짜 및 신고한 매수(총량)는 별도 입력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단의 신고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

- 도안 신고 후 전단에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나.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심의 절차 생략(안 제24조제3항)

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수거한 사람에게 실비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신설(안 별표 6)

-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78호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공해배출저장시설”을 “공해배출저장시설, 기계보호시설 및 임시창고”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장부지에서 허용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11조)

-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대상인 ‘공장부지 내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기계보호시설 및 임시창고를 추가

나. 건축지도원 자격 기준 개선(안 제15조)

- 건축지도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권고안을 수용하여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추가
- ※가, 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IV」 관련 사항 반영{기획예산실-10116(2024. 7. 30.)}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 변경(안 제25조제1항)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 높이 10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라.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 조항 중 상위법령 조문 재기재에 불과한 부분 삭제(제27조제2항)

-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 미이행, 착공신고 미이행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삭제

마.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27조의3)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라, 마: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계획에 따른 자치법
규 정비 자료 제출」 관련 사항 반영{기획예산실-5324(2024. 4. 2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4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학예연구 학예일반 연구관·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7의 제2호가목 시설 건축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2조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천

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강사 수당 기준 A급 및 B급 기준란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재 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및 인용 법령 일괄 정비

-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나. 개정대상 : 규칙 3건 (2개 소관부서)

연 번	부 서	조 례 명
1	총무과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조)
2	총무과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3	문화관광과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3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2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6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제1조(「예천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 예천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제2조(「예천군 민원 위임전결 규정」의 개정) 예천군 민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분류기호 26-134 민원사무명 중 “문화재 매매업 신고”를 “문화유산 매매업 신고”로 하고, “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를 “문화유산 매매업 폐업신고”로 한다.

제3조(「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을 “예천군 비지정국가유산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비지정문화재의 보수·관리)”를 “(비지정국가유산의 보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 관련”을 “국가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하고, 역사분야란 중 “지정문화재와”를 “지정문화유산과”으로 하며, 건축분야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제목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하고,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을 “「예천군 비지정국가유산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비지정국가유산 보수지원”으로 하고, “2. 비지정문화재 향후 관리(이용) 계획”을 “2. 비지정국가유산 향후 관리(이용) 계획”으로 한다.

제4조(「예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예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및 인용 법령 일괄 정비

-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나. 개정대상 : 훈령 4건 (4개 소관부서)

연 번	부 서	규 정 명
1	기획예산실	예천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안 제1조)
2	문화관광과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조)
3	종합민원과	예천군 민원 위임전결 규정(안 제3조)
4	건설교통과	예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4조)